

『구미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지정
및 정비계획(안)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대상지역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편리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으나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인하여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하며,
- 건축물의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정비된 가로망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공간 기능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바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비사업의 명칭 :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
- 정비구역 및 면적
 - 위 치 :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942-1번지 일원
 - 면 적 : 28,000m²

○ 토지이용계획

- 용 도 : 제1종 일반주거지역
- 정비구역

(단위 : m², %)

구 분	계	주거용지	공공시설용지		
			계	도 로	경로당
면 적(m ²)	28,000	22,641	5,359	4,710	649
구성비(%)	100	80.86	19.14	16.82	2.32

4. 관련근거

-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조

5. 검토의견

- 구미 장천면 상장리 94-1번지 일원 상장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 대상지구는 28,000m²로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 일반주거 지역으로 도시계획도로의 미개설로 도로망 체계가 불합리하며,
- 건축물의 무분별한 개발로 주거환경이 불량하여 주거환경개선 사업의 시행을 통하여 정비된 가로망과 쾌적하고 효율적인 주거 공간기능의 확보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바,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4조에 근거하여 시행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.
- 다만, 도로개설시 준공 후 도로의 이중 굴착 방지를 위하여 전기, 통신, 상수도 등 관련기관과 사업시기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,
- 아울러, 사업시행 시 도로우수처리를 하천 홍수위와 연계 검토하여 내수배제가 원활히 되도록 하여 집중호우 시 침수되는 일이 없도록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.